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75

발의연월일: 2023. 2. 13.

발 의 자:소병훈·강득구·김승남

김정호 · 김태년 · 민형배

서삼석 · 서영교 · 안호영

어기구 · 이인영 · 허 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농촌과 어촌 모두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고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현행 규정은 2개의 중앙 부처중 어느 부처에 보고하여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고체계를 구분하여 농촌과 어촌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농촌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양 부처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3항).

법률 제 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 3. 제1호와 제2호 외의 농어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	③
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u>농림축산식</u>	<u>다음 각 호의</u>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u>구분에 따른 자에게</u>
<u>에게</u> 보고하여야 한다.	<u>.</u>
<u><신 설></u>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
	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u>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u>
	<u>림축산식품부장관</u>
<u><신 설></u>	2.「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u>」</u>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관
	<u>할</u>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
	<u>관</u>
<u> <신 설></u>	3. 제1호와 제2호 외의 농어촌
	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
	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

	<u>관</u>
④ · 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